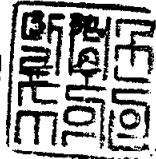


대구광역시 달성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안

의 안	
번 호	300

제출일자 : 2007.
제출자 : 달성군



1. 의결주문

대구광역시 달성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
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정이유

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,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, 장애인복지
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창단 운영되고 있는 달성군 실업정구부 및
휠체어테니스단의 명확한 운영근거와 팀운영의 투명성 확보, 예산지원
등을 위한 근거를 마련코자 함

3. 주요내용

- 직장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근거와 목적을 명시하여
경기부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(안 제1조)
- 설치종목 및 선수단을 구성하여 팀운영의 효율성 도모와
임용권자 및 임용기간 등을 명시하여 팀운영의 효율성 도모
(안 제2조, 제3조)
- 운영위원회를 구성, 기능을 명시하여 우수한 선수확보 및
지원을 통한 팀운영의 내실화 도모(안 제5조)
- 직장경기부의 임무 및 단원의 자격의 부여(안 제6조, 제7조)
- 지도자 및 선수에 대한 해임사유를 명시하여 직장경기부에
대한 소속감 고취, 선의의 경쟁을 통한 훌륭한 성적을 거두어

전세계로 도약하는 군의 명예를 더높힘(안 제8조)

- 복무 및 훈련, 보수 등의 자급규정을 명시하여 질서와 책임감 있는 팀 운영 도모(안 제10조, 제11조)
- 합숙소 설치, 차량구입 운영으로 단원들의 사기를 극대화 하여 각종 대회참가시 홀륭한 성과 거양(안 제12조, 제13조)
- 기타 세부사항은 규칙을 제정하여 운영(안 제14조)

4. 제정조례안 : 별 첨

5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규 :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,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,
장애인복지법 제26조

나. 입법예고 : 2007. 2. 6 ~ 2. 26(특이사항 없음)

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제 호

대구광역시 달성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10조와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달성군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설치종목) 달성군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종목은 청구선수단 및 휠체 어테니스단으로 하고 단원의 수는 따로 정한다.

제3조(구성) ① 선수단은 단장, 부단장, 부장과 단원으로 한다.

- ② 선수단의 단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단장은 문화체육과장이 되며 부장은 체육진흥담당이 된다.
- ③ 단원은 감독·코치(이하 “지도자”라 한다) 및 선수로 구성한다.

제4조(임용) ① 단원은 군수가 임용한다.

- ② 단원의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고 연장할 수 있으며, 임용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단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- ③ 입단계약서의 서식 및 작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.

제5조(운영위원회) ① 선수단에 관한 인사관리를 위하여 달성군청직장경 기부운영위원회(이하 “운영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- ②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, 부위원장은 주민생활지원 국장이 되며, 위원은 기획감사담당관, 행정지원과장, 문화체육과장이 된다.

④ 운영위원회의 심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단원의 임용 및 등급 사전 심의
2. 단원의 직권면직 결정 및 징계의결
3. 단원에 대한 재해보상금의 지급 결정
4. 기타 단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의결

⑤ 운영위원회는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⑥ 운영위원회는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, 간사는 체육진흥담당이 된다.

⑦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·날인하여야 한다.

1. 개최일시
2. 출석위원의 서명
3. 심의안전과 내용
4. 의사
5. 기타 중요한 사항

제6조(임무) ① 단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단원을 지휘한다.

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여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임무를 대행한다.

③ 부장은 선수단을 지도·감독한다.

④ 감독은 단장의 명을 받아 우수선수의 발굴육성, 훈련, 대회출전, 체력관리, 합숙소운영 등을 지도한다.

제7조(단원의 자격) ① 단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「지방공무원법」

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.

② 선수는 전국규모 이상의 대회에서 입상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선수등록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.

제8조(해임) 군수는 지도자 및 선수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직을 해임할 수 있다.

1.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
2. 「병역법」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는 사람
3. 경기 또는 훈련을 태만히 하거나 고의로 기피한 사람
4. 경기성적이 극히 부진하여 향후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
5.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하여 선수단 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사람
6. 지도자 및 선수로서의 품위를 손상했을 때
7. 정원 또는 예산감축으로 팀운영 규모를 축소하고 감원방침이 결정되었을 때
8. 구조조정, 예산부족, 사건·사고 등으로 팀운영이 불가하여 해체가 결정되었을 때
9. 지도자의 의견으로 선수 해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
10. 자의에 의하여 사직원을 제출하는 사람
11. 기타 해임의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

제9조(겸직금지) 지도자 및 선수는 단장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.

제10조(복무 및 훈련) ① 단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「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」를 준용한다.

제11조(보수 등의 지급)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 및 훈련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12조(합숙소 운영) 단원의 기량향상과 경기력 배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숙소를 설치, 운영할 수 있다.

제13조(차량구입 운영) 단원의 훈련 및 대회참가에 사용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량을 구입·운영할 수 있다.

제14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「대구광역시 달성군청 정구부 관리 운영 지침」 및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휠체어테니스단 관리 운영 지침」에 의한다.

부 칙

- 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(경과규정) 종전의 「대구광역시 달성군청 정구부 관리 운영 지침」 및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휠체어테니스단 관리 운영 지침」에 의하여 설치된 종목의 선수단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 및 임용된 것으로 본다.